



WTO 정부조달 협정관련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기술용역 분야)

李 隆 永*
Lee, Yung Young

1. 서 언

내년 초(199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각부처에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 제도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WTO 정부조달 협정 개요, 기술 용역 업체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등을 개진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국면에 대처할 수 있으면 한다.

- 1993. 12. 15: 정부조달 확장 협상 타결
- 1994. 4. 15: 정부조달 협정문에 서명(미국, 일본 EC, 한국등 22개국)
- 1996. 1. 1: 동협정 발효(우리나라만 1년 유보)
- 1997. 1. 1: 우리나라 조달 시장 개방 예정

참고: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22개국) 현황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필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이스라엘, 한국

2. 정부조달 협정 관련 요약

2.1 협정 가입경위

2.2 우리나라의 양허기관 및 양허범위

(단위:만 SDR)

구 분	양 허 기 관	양 허 범 위
정 부	· 42개 중앙행정기관 (안기부등 4개안보 관련 기관 제외)	· 물품·서비스: 13(1.5억원) · 건설: 500(약 55억원)
지 자 체	· 서울시등 6개시와 9개도	· 물품·서비스: 20(2.2억원) · 건설: 1,500(약 165억원)
기 타 기 관	· 한전, 한국통신등 23개 정부투자 기관(한국통신: 통신제품 제외)	· 물품: 45(5억원) · 건설: 1,500(약 165억원)

※ 1SDR = 약 1,100원

* 전기통신기술사, (주)동남통신 부사장

2.3 협정 주요내용

- 협정적용대상 및 범위규정
-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적용
- 입찰공고방법, 사용언어등 규정
-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등

2.4 『정부조달제도 국제화추진기획단』 구성·운영계획(안) 요지

가. 기본방향

- 정부조달시장개방과 선진국 건설시장공략에 대비한 다양한 의견수렴
 - ※ 정부, 학계 및 업계등의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
-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국가계약법령 및 제도정비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WTO 협정이행 및 APEC 조달협정타결에 적극 대응

나.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

- 정부조달관리법령 및 제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국제입찰에만 적용될 법령제정('97.1.1 발효)
 - 현행 계약제도 미비점보완 병행
- 국제조달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조직·운영·절차등 필요사항 마련
- 미국, EC, 일본등 기 협정발효국('96.1.1부터 발효) 법령체계 및 제도 조사·분석

다. 기획단 구성·운영계획(안)

-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구성·운영
 - 단원은 16인(정부, 학계, 연구계, 민간단체 등), 간사는 국고국장
 - 월 1회 기획단 회의개최
- 재경원 국고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반 구성·운영
 - 분야별로 팀(총괄, 공사, 물품, 용역) 구성·운영
 - 실무팀 회의는 필요시 반장이 수시 개최
- 기획단은 '96. 2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라. 실무추진반 중점검토사항

<공통사항>

- 정부조달협정내용 세부분석
- 협정내용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제도점검
- 협정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검토
- 외국제도조사 및 국내제도와 비교 분석
- 현행 조달제도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안 마련 <용역분야(예시)>
- 입찰 및 낙찰제도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용역과 업무한계 검토
- 용역대가 기준 종합 검토

2.5 정부계약제도 개선(안)

가. 제·개정 법령

현행법규	제·개정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 동법시행령(대통령령) ○ 외자구매계약규정(대통령령) ○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유지 ○ 개정 ○ 동법시행령특례규정 제정 ○ 폐지(특례규정에 통합) ○ 개정 ○ 동법시행특례규칙 제정

※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 규정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국가계약법시행특례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 규칙(입법예고) 8월 30일자 관보

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대상축소	10억 미만	1.5억 미만
○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확대	10억 이상	1.5억 이상
○ 지역제한대상 금액조정	3억 미만	1.5억 미만
○ 입찰보증금율 통일	○ 원칙: 입찰금액의 5% ○ 장기계속공사: ~ 3% ○ 단기공사등: ~ 2%	입찰금액의 5%로 통일 ※ 시행령 37조, 83조
○ 계약보증금 산정기준 변경	○ 예정가격을 기준	○ 계약금액을 기준 ※ 국제관례에 부합 ※ 시행령 50조 개정
○ 용역입찰의 경우도 기술보유상황등으로 제한 가능	〈신 설〉	○ 용역계약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 ※ 사유: 용역도 공사의 경우와 같이 특수 기술등에 의한 제한경쟁이 필요 ※ 시행령 21조 개정
○ 물품·용역의 경우도 입찰관련 서류 열람	○ 고시금액미만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시 설계서 열람 ○ 고시금액이상 공사는 설계서 배부	○ 고시금액미만의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입찰관련서류 열람 ※ (고시금액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은 입찰관련 서류 배부) ※ 사유: 국제관례에 부합 ※ 시행령: 14조, 16조 개정 ※ 입찰관련서류: 입찰공고물,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계약조건, 설계서등
○ 입찰공고 내용 추가	〈신 설〉	○ 현장설명참가 의무 여부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입찰관련서류 구입비용등 ※ 사유: 협정문 내용 반영 ※ 시행령: 36조 개정
○ 개산계약·사후원가 검토 조건 부계약 정산기준 설정	○ 계약이행후 원가계산방식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산 기준·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열람 ○ 동기준등에 따라 정산 ※ 사유: 정산기준 등을 입찰전에 미리 정

		하여 열람하게 함으로서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 ※ 시행령 : 72조, 73조 개정
○ 입찰시 서면방식도 허용	○ 압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 신고한 인감만 허용	○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도 사용가능토록 허용 ※ 국제관례에 부합 ※ 시행규칙 42조 개정
○ 기성대가지급기간 단축	○ 적어도 90일마다 지급 ○ 검사완료후 대가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검사완료후 7일 이내 ※ 시행령 제 58조
○ 수의계약사유 추가	○ 계약체결후 기한내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해제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착수한후 계약이행중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도 수의 계약가능

다. 국제조달 특례규정 제정

1) 입찰참가자격 등급별 심사제 도입(특례규정 제 10조)

- 업체의 일반적인 기술자격, 능력, 실적, 재무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여 유자격자명부 작성
- 동 명부에 등록된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자격의 등급을 사전심사제와 개별사전 심사제 비교

○ 『등급별 사전심사제』는 일종의 Long List 성격으로서 1차적으로 일반적인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 해당등급에 상응하는 참가자격을 부여(예 : 1년동안 유효)

○ 『사전심사제』는 Short List 성격으로서 등급별 심사를 거친 업체를 대상으로 2차적으로 개별 수행능력 및 경험 등을 종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2) 기타 정부조달협정문 반영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방식: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등 4가지 ○ 입찰공고기간: 10일 ○ 입찰공고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 입찰시 사용언어: 한국어 ○ 낙찰자 결정통지: 개별통지 ○ 우편입찰허용 가능 ○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실적보고 (국가기관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 ·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등 3가지 ※ 현행 제한경쟁이 일반경쟁에 포함 ○ 40일 ○ 관보 또는 서울신문 ○ 한국어원칙,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요약공고 ○ 관보 또는 서울신문에 공고 ○ 낙찰정보공개 요청시 공개 ○ 우편입찰 금지 배제 ○ 텔렉스, 전보 및 패시밀리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제출 허용 ○ 중앙관서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계약실적은 각각 내무부 장관 및 각 주무부장관이 재경원장관에게 제출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방안 마련(특례 규정 제 26조-제 36조)

- 구성 및 설치시기
 - 위원장:재경원차관
 - 위 원:15인내(중앙행정기관의 2,3급 공무원, 교수, 변호사, 조달 전문가등)
 - 설치시기:97. 1

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개정 추진
라. 향후추진일정

- 96. 8월중:관계기관의견조회
- 96. 10~12월:경제 장·차관회의 상정 법제처 심의

3. 기술용역 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용어의 정의

- 엔지니어링(Engineering)의 정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보수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로 정의한다.(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2조제 1호 및 동시행령 제 2조)
-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 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기술사법 제 3조)

- 건설기술 용역의 정의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건축사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구매·조달·시험·공사감리·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구조의 안전성 검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역무를 말한다.
(건설기술 관리법 제 2조 제 3호)
- 기술용역의 정의
건설기술 관리법 제 2조 3호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2조 제 1호와 이에 준 한 용역을 말한다.(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 3호)

3.2 기술사 분포현황

기술사의 인원, 자격종목, 연령, 직업분포, 지역분포 현황은 하기와 같다.

가. 기술사 총인원

<표 1> 기술사 총인원: 95년 1월 현재 10,673명

기술 분야	기계	금속	화학 및 용접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	정비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산업 디자인	에너지	안전 관리	환경	산업 응용	교통	구술사	합계
계	952	177	345	286	80	108	106	22	3,650	2,781	74	124	245	335	99	45	0	172	355	267	334	107	9	10,673

나. 자격종목:자격수 97개 종목 총인원 10,673명
· 최소인원 제품디자인 기술사 0명,

의류기술사 1명,
임산가공기술사 1명,

영림기술사 3명, 건축시공 기술사 2,221명
 어로 기술사 3명, 토목시공 기술사 2,260명
 포장기술사 7명
 · 최대인원 도로 및 공항 기술사 247명 다. 직업분포
 토목구조 기술사 308명

〈표 2〉 기술사의 직업 분포

분 야	배출수	회원수	기술용 역업체	일 반 기업체	건 설 업 체	공무원	국 영 기업체	대 학 교 수	연 구 기 관	기 타
합 계	10,673	6,503	1,863	1,433	1,588	371	342	371	312	223
비율(%)		100%	28.69%	22.06%	24.45%	5.71%	5.25%	5.68%	4.79%	3.37%

· 분석 - 기술사를 법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기관은 기술용역업체 및 건설업체인데 여기에 속해있는 기술사는 53. 14%(3,451명)임으로 여타 기술사에 해당하는 47%는 기술사 자격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또한 기술사 배출 총수 10,673명중 기술사회 가입회원은 61%에 불과하다.

라. 연령 분포

〈표 3〉 기술사의 연령 분포

(95. 1 현재)

연 령 대	30 ~ 40	41 ~ 50	51 ~ 60	61 이상	계
회 원 수	1,928	2,405	1,320	361	6,104
분 포 율	32%	40%	22%	6%	100%

참고: 종목별 이증자격수를 제외한 실 회원수임.(이증자격자: 481명)

· 분석 - 이상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마. 지역별 분포

〈표 4〉 기술사의 지역별 분포

(95. 1 현재)

순번	지 역	회 원 수	분 포 율
1	서울특별시	3,906명	64.95%
2	부산광역시	188명	3.13%
3	대구광역시	76명	1.26%
4	인천광역시	115명	1.91%
5	광주광역시	77명	1.28%
6	대전광역시	207명	3.44%
7	강원도	13명	0.22%

8	경기도	786명	13.07%
9	경상남도	103명	1.71%
10	경상북도	97명	1.61%
11	전라남도	17명	0.28%
12	전라북도	22명	0.37%
13	제주도	6명	0.10%
14	충청남도	21명	0.35%
15	충청북도	15명	0.25%
16	기타	365명	6.07%
총 계		6,104명	100%

참고: 종목별 이증자격수를 제외한 실 회원수임.
(이증자격자: 481명)

바. 현황분석

상기에서와 같이 기술사 배출현황등을 검토한바 기술사의 수요가 요구되는 분야도 있지만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도 있음.

특히 우려되는 바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신고 기준완화로 업체수만 증가하다 보니 역으로 기술사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기이한 현상이 돌출되었다고 보며, 수요와 공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3.3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의 당면 문제점

엔지니어링 산업은 고부가 가치의 지식산업임을 감안, 국가전략 산업으로 적극육성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기준의 완화등으로 업체의 난립에 따른 설계품질의 질저하 현상으로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상황임.

- 1)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기술사의 참여가 법에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 대체 기술인이 인정기술자의 명목으로 엔지니어링 주체로 역할전도 추세에 있어 엔지니어링 회사의 난립, 설계기술의 저하, 안전도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 2) 더구나 엔지니어링 용역수행 방법이 아직 비과학적, 비확실적인 면이 있어 근간에 공공시설물의 대형사고의 연발등으로 국내기술인의 신용도가 실추되어 있음.
- 3) 여기에 1997. 1월 부터 국제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경쟁체제에 대비한 기술수행표준 (Standard practice), 기술인의 세계화훈련, 기술자료의 흡수와 축적 미흡등으로 경쟁력 열세인 상태임.

3.4 기술용역 업무의 종류 및 범위

- 가. 기본설계: ① 주요설계 수행지침
 - ② 예비 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 나.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 ②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 ③ 설계요강의 결정
- ④ 설계지침의 작성
- ⑤ 도면 및 계산서 작성
- ⑥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⑦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

- 다. 공사감리: ①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②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 ③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④ 공정 및 기성고 사정

3.5 기술용역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하기 현황 및 문제점은 과학기술처 정책관리연구소 주최의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육성방안” 발표자료를 인용한 것임.

가. 현황

- ① 기업의 영세성 - 정상운영도 어려워
 -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1996년 2월 현재 신고된 총 912개 업체중 70%에 해당하는 644개 업체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으며,
 - 기술인력이 4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3%인 571개 업체에 달함.
 -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답변한 업체중 36%에 해당하는 업체가 10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② 수주환경 악화 - 업체의 급증, 입찰과정에 있어서의 제약
 - 신고업체와 미신고엔지니어링업체의 수가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짐.
 - 신고된 업체은 '94년 761개 업체에서 '95년 900개 업체로 늘어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신고 업체가 급증하여 최근 한국통신

전남사업본부의 용역사업 입찰시 300업체가 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

③ 낮은 기술수준

-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총체적인 기술수준은 선진 우수업체 대비 45-70% 수준에 불과함.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분야가 45-55%, 상세설계 분야가 60-70%, 감리/시운전/사업관리 분야가 50-60%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10%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됨.

④ 전문화 미흡 -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시장구조 및 가격구조가 중소기업 엔지니어링의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음.
- 총 912개 업체중 40%에 해당하는 369개 업체가 3개 전문분야 이상에 신고하고 있으며, 5개 분야 이상에 신고한 업체도 27%에 달함.

⑤ 하청계열화 - 단순하청수준에 머물러

-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8%에 불과하며, 대기업의 하청거래 목적도 하청업체의 저임금을 활용하거나 경기변동의 조절수단으로 삼고 있는 단순하청수준임.
- 대부분 발주가 불안정하고 하청단가가 저렴하며, 대금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경영이 어려우며 대기업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임.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 72%, 기술사사무소의 경우에는 90%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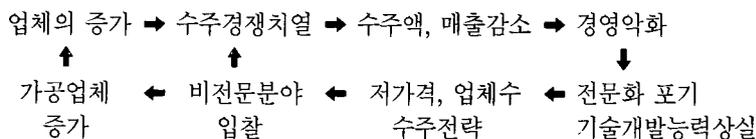
⑥ 기술인력 -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경력자의 이직율이 높음.

- 고급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신규 채용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력기술자의 이직율이 높아 기술축적 및 경험축적이 어려움.
-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종업원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인력의 유인과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움.

나. 문제점 및 요인분석

① 사업환경 - 전문성과 기술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 전문우수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우대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전문성 확보와 기술 및 품질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가 없음.
- 신고제도 및 입찰제도에 있어서도 기술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가 구별되거나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미함.
-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도에 있어서 고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신고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소규모용역 입찰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가격경쟁에 의하여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므로 기술능력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난립함.
- 그결과, 전문성과 기술능력의 축적 보다는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전문분야에 입찰하거나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게



되며 기업의 채산성 악화, 내부자원 및 능력의 분산으로 기술축적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② 수직적, 수평적 협력업체 미비 - 업체간 협력이 어려운 환경
 -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능력과 품질에 우려를 갖고 있음.
 - 대기업으로서도 전문기술을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고도화된 하청계열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음.
 - 대기업의 입장에서 하청거래를 하는 주요 이유는 전문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하청기업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원가상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기변동의 조절 수단으로 물량이 많을 경우 이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
 - 입찰관행, 지원제도 측면에서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어려운 환경임.
 - 발주처가 관리부담의 증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점등의 이유로 업체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약방식인 부대입찰 또는 공동계약을 선호하지 않음.
 -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지원하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도 부족함.
- ③ 전문기술인력의 분산과 이탈 - 기술능력의 약화
 - 고급인력에 대한 유인수단이 미흡하고 종업원 개개인과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보다는 독립창업을 통하여 사업주가 되려는 의욕이 강하여 엔지니어링업체 전문기술력의 분산과 이탈이 심함.
 -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

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소홀히 하였음.

- 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인력유인 제도가 미흡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음.

- 기술인력이 창업등을 통하여 직접 기업경영에 나서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관리 및 기업경영을 위한 노력이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술력을 구사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임.

4.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엔지니어링 산업은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기술산업이다. 고로 마구잡이식 경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모순된 기술산업 정책의 하나라고 본다.

최근 공공시설물 시공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사회에서 기술전문가의 올바른 인정과 활용이 결여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각전문 영역에서 인정한 시험,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격증을 부여한 이상 전문분야별 해당자격자가 전문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장려하는 것은 국민복지와 안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이지만 결코 전문가의 독립권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자격있는 전문가 수를 늘려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기술사는 오로지 전문직업인의 지정한 전문가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기반시설의 안전 문화 유지를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정부는 기술사의 활용을 아래와 같이개정 또는 추가지정하여 기술사들의 건전하고, 활기찬 참여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행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을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 기술자 등급별 규정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험등으로 구분된 기술자를 신고요건으로 하여 신고기준인력을 “기술부문 별과 엔지니어링 업체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에 따라 기술사 1인 이상과 각급 기술자 9인 이상”으로 개정요망

-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는 반드시 기술사가 설계·검토하여 서명 날인토록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24조(성과품에의 서명 날인)를 개정하여 일정규모의범위를 명시하여 기술의 실명화가 시행되어야함.
- 다.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기술자 등급별 계수표에서 현행 기술사의 평점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술사의 활용시책에 부응하도록 개정요망.

5. 결 론

무한경쟁시대에서 유일한 경쟁 수단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체를 이시점에서 개발 육성하지 못하면, 시장개방에 따른 선진업체와의 경쟁에 있어서 업체의 종속화를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기 4항 강화방안을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업체의 전문성 확보, 기술능력의 제고 및 생산성의 향상 노력을 통하여 전문 통신기술의 주체로서 재탄생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